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4. 4. 1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8일
- 나. 제출자 : 윤준용 의원 외 7명
- 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
제1차 회의(2014년 4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·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 규정(안 제3조)
- 적십자사 조직의 보조금 지급 등 규정(안 제4조)

-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표창(안 제5조) 경비를 보 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4조에 따르면 “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 규정하고 있음.
- 대한적십자사 사업목적을 위해 구 단위 조직으로 서울지사에 소속된 구로·금천·영등포봉사관이 있고(문래동3가 54-2 소재)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 및 활동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보조받고 있으며, 우리 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.
-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는 17개동 17개 봉사회와 47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,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봉사 활동, 구호사업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적십자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” 고 규정되어 있음. 따라서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함.
- 다만,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영등포지구협의회가 대한적십자사 하부조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외하였으며,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단

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등록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윤준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4월 일

발 의 자 : 윤준용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·봉사의 적십자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 규정(안 제3조)
- 다. 적십자사 조직의 보조금 지급 등 규정(안 제4조)
- 라.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표창(안 제5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복지정책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14. 3. 26 ~ 3. 31) : 의견 없음

2) 타구 제정현황 : 서울시, 성북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 조직”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적십자사 회원”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적십자사 사업”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
3.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
4.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 지급 등)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,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표창)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